

독도연구센터 : 김용환 책임연구원

kyh161@kmi.re.kr 02)2105-4953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섬 영유권 분쟁의 전말

- ICJ의 '페드라 브랑카' 사건 판결 분석 -

2008. 6. 16.

목 차

<요 약>

I. '페드라 브랑카' 도서 분쟁사건	1
II. ICJ 판결의 주요 내용 및 근거	4
III.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소송전략	12
IV. 판결에 대한 양국의 입장 및 시사점	16



< 요약 >

국제사법재판소,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섬 영유권 분쟁사건 판결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5월 23일 그 동안 심리해온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도서 영유권 분쟁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음
- 즉, ICJ는 문제가 된 페드라 브랑카는 싱가포르에, 미들락스는 말레이시아에, 사우스 레지는 두 나라의 영해확정 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음

말레이시아가 1979년 영유권 주장하면서 국제 분쟁으로 비화

- 실질적으로 싱가포르가 관할하고 있던 페드라 브랑카 섬은 싱가포르 해협의 선박 통항로에 있어 양국간 도서 분쟁은 국제적 관심을 모아왔음
- 그 동안 두 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했으나 합의 도달에 실패하고, 2003년 7월 ICJ에 이 사건을 정식으로 제소했음

섬의 소유권을 부인한 공문이 말레이시아의 ‘결정적 패인’

- 1953년 싱가포르는 영해경계확정과 관련해 페드라 브랑카 섬의 법적 지위에 대해 말레이시아에게 질의한 바 있는데,
- 이때 말레이시아가 페드라 브랑카의 소유권(ownership)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보낸 것을, ICJ는 영유권(sovereignty)의 포기로 간주했음

ICJ, 역사적 권원보다 싱가포르의 실효적 지배를 더 중시

- ICJ는 판결에서 말레이시아가 주장한 페드라 브랑카 섬에 대한 고유 영토론을 지지하는 한편, 이 섬에 대한 원시적 권원을 인정하였음
- 그러나 싱가포르가 ‘주권자의 자격으로 행한’ 실효적인 지배를 말레이시아가 오랫동안 묵인했다며 싱가포르의 입장을 지지한 것임

두 나라 간 또는 주변국가와의 해양경계 획정문제 남아

- 이 같은 ICJ 판결에 대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다만, 사우스 레지 문제는 양국의 해양경계 획정에 따르는 것으로 결론이 남아 따라 앞으로 추가적인 해양경계 획정 협상이 남아 있음

싱가포르, 국제재판을 통한 도서 분쟁 해결방식 ‘선호’

- 싱가포르는 ICJ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에서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는데에는 국제재판을 통한 해결방식이 우월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 이러한 태도는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외교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I. ‘페드라 브랑카’ 도서 분쟁 사건

말레이시아, 1979년에 페드라 브랑카 섬을 자국영토로 표시

- 페드라 브랑카 사건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도서 영유권 분쟁 사건임
 - 1979년 말레이시아가 정부지도에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 섬을 ‘플라우 바투 푸테’(Pulau Batu Puteh)라는 이름을 붙여 자국의 영해내로 표시하였음
 - 이에 싱가포르가 1980년 정식으로 서면 항의함으로써 두 나라의 도서분쟁으로 비화되었음

싱가포르, 섬의 소유권 분쟁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제의

- 이 문제의 해결책을 논의하던 중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의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 회부 제의에 동의하였음
 - 양국은 2003년 2월 양국은 이 사안을 ICJ에 회부하기로 특별협정을 체결하였음)

<표-1> 분쟁 대상이 된 도서 현황

구분	주요 현황
페드라 브랑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강암 지대로 이루어진 무인도서 ■ 싱가포르 해협 동쪽 입구 ■ 길이 137m, 평균폭 60m, 저조시 면적 약 8,560㎡ ■ 호스버러(horsburgh) 등대 소재
미들락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개의 바위군, 페드라 브랑카로부터 남쪽으로 0.6해리
사우스 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출지, 페드라 브랑카로부터 남서쪽으로 2.2해리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국제사법재판소에는 국가만이 제소할 수 있으며(ICJ 규정 제34조), 사전에 합의하지 않는 한 분쟁 당사국 일방의 제소만으로는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음. 현재 ICJ의 강제관할권 수락국은 65개국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모두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을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지 않은 상태였음. 기타 ICJ와 관련해 자세한 것은 김용환·최태현·이주하,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절차상의 쟁점 및 소송전략적 대응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p.104 참조.

- ICJ는 2003년 7월 소송을 접수한 지 약 5년만에 페드라 브랑카가 싱가포르의 섬이라는 판결을 내렸음

페드라 브랑카는 등대만 있는 무인도, 나머지는 암초 또는 간출지

- 페드라 브랑카는 길이 137미터, 평균폭이 60미터(저조시 약 8,560평방미터)의 화강암 지대로 무인도서임
 -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잇는 국제무역항로인 싱가포르 해협²⁾의 동쪽 입구에 위치하고 있음
 - 싱가포르에서 동쪽으로 24해리 정도 떨어져 있고, 말레이시아의 조호르 지방에서 7.5해리, 인도네시아의 빈탄 섬에서 7.6해리 정도 떨어져 있음
- 미들락스는 페드라 브랑카로부터 남쪽으로 0.6해리 떨어져 있는 두개의 암초군으로 항상 수면위에 있으며,
 - 사우스 레지는 페드라 브랑카로부터 남서쪽으로 2.2해리 떨어져 있는 간출지(low-tide elevation)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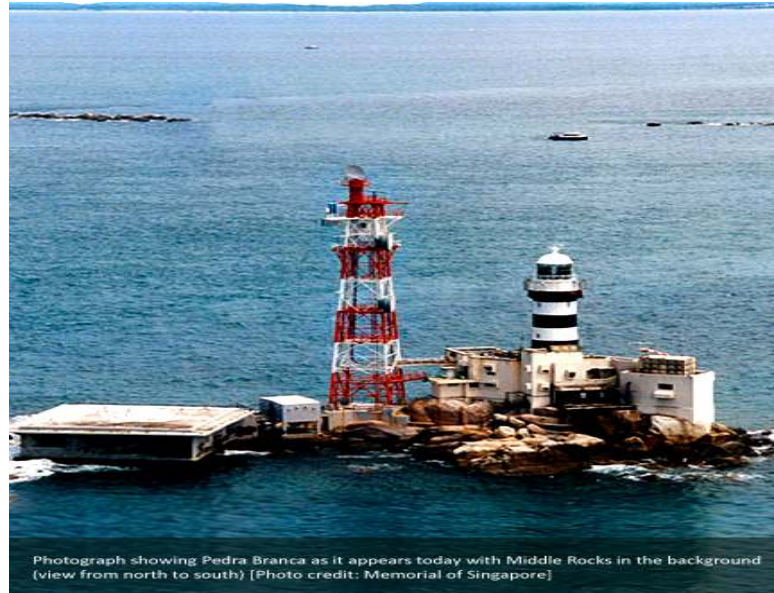
<그림-1> 문제가 된 페드라 브랑카 섬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북위 1°19'48"과 동위 104°24'27".

<그림-2> 페드라 브랑카 섬에 있는 호스버러 등대



주 : 등대 앞쪽으로 화면 양 끝쪽에 보이는 두개의 암초 군이 미들락스, 사우스 레지는 간출지로서 그 우측상단 방향(보이지 않음).
자료 : <http://www.icj-cij.org>

II. ICJ 판결의 주요내용 및 근거

1. 청구취지 및 결과

페드라 브랑카, 어느 나라의 섬인가 ICJ에 회부

□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2003년 7월 유엔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아래 도서의 영유권을 판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청구하였음

- 페드라 브랑카/플라우 바투 푸테³⁾
- 미들락스⁴⁾
- 사우스 레지⁵⁾

<표-2>

페드라 브랑카 사건 일지

일자	내용	비고
1979.12.21	말레이시아, 페드라 브랑카 섬을 말레이시아 영토로 표시한 지도 발간	
1980.2.14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게 서면 항의	*결정적 기일
1989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게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제의	
1993.2.6	정부간 제1차 협상에서 미들락스, 사우스 레지 소속 문제 제기	*결정적 기일
2003.2.6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특별협정 체결(5.9발효)	*ICJ 회부합의
2003.7.23	ICJ 사무처(registry)에 소장 접수	서면절차 개시

3) 싱가포르에서는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로, 말레이시아에서는 플라우 바투 푸테(Pulau Batu Puteh)로 부름. 이하에서는 페드라 브랑카로 칭함.

4) Middle Rocks.

5) South Ledge.

<표-2> 페드라 브랑카 사건 일지 (계속)

일자	내용	비고
2003.9.1	서류제출기한 확정	서류제출기한은 10개월 내 (특별협정 제4조 제2항에 의거)
2004.3.25	준비서면(memorial) 제출기한	
2005.1.25	답변서(Counter-Memorial) 제출기한	
2005.11.2	제2답변서(Reply) 제출기한	
2007.11.6	구두변론 절차 개시	
2007.11.23	구두변론 종료	*심리절차 개시
2008.5.23	판결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ICJ는 지난 5월 23일 판결에서 3개의 도서 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음⁶⁾

- 페드라 브랑카는 싱가포르의 섬(12:4)이며,
- 미들락스는 말레이시아의 섬(15:1)이며,
- 사우스 레지는 양국의 영해중첩수역에 있으므로 추후 경계확정에 따라 결정 될 것이라 판시(15:1)하였음

※ 주 : 괄호 안은 투표에 참여한 재판관의 수와 비율

2. 싱가포르의 주장

싱가포르의 주요논거(1): 무주지인 페드라 브랑카 섬을 발견해 선점했다

□ 페드라 브랑카 섬의 영유권(territorial sovereignty)은 1847년에서 1851년 사이 영국의 등대건설 기간 중 확립되었으며, 영국을 승계한 싱가포르가 이를 가짐

6) ICJ의 재판부는 15인으로 구성되어있고, 9인 정족수에 출석한 재판관의 과반수로 결정하나(ICJ 규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 ICJ 규정 제55조), 이번 재판에서는 임시재판관이 2인 선출되어 총 17인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었음. 그러나 재판소장인 히긴스(R. Higgins)가 사건을 기피해 빠짐으로서 16인이 투표에 참석함. 본 고 p. 12 참고.

- 160년 전 영국 식민 정부가 페드라 브랑카 섬에 호스버리(Horsburgh) 등대와 기타 시설물을 건설하였음
 - 그 이후 전 도서와 주위 수역에 대해 계속적이고 공공연하게 영유권 행사를 해왔고,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항의는 없었음
- 페드라 브랑카의 영유권을 가지는 국가가 미들락스와 사우스 레지의 영유권도 소유함
- 미들락스와 사우스 레지는 페드라 브랑카의 속도로서 인근해역에 대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해 왔음
 - 말레이시아의 권원을 인정할 만한 관할권 행사 증거가 없고, 동 도서들도 페드라 브랑카의 영해내에 있으므로 싱가포르의 영유권에 속한다고 주장함

싱가포르의 주요논거(2): 말레이시아는 섬의 영유권을 부인했다

- 1953년 말레이시아의 조호르(Johor) 국 국무장관 대행이 보낸 공문서한에서 페드라 브랑카에 대한 소유권을 부인한 바 있음
- 또한 1962년에서 1975년까지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행한 일련의 공식지도에도, 페드라 브랑카를 싱가포르에 속하는 것으로 표시해왔음
 - 1977년에는 군사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섬에 싱가포르의 국기를 게양했을 때에도 말레이시아 정부의 항의는 없었음

3. 말레이시아의 주장

말레이시아 주요논거(1): 페드라 브랑카는 말레이시아의 고유영토였다

- 말레이시아는 1847년 영국이 페드라 브랑카 섬에 대한 영유의사를 표명할 당시 무주지가 아니었음을 강조함

- 17세기 중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싱가포르 해협에서 중국 선박을 나포한 것에 대해 조호르 국⁷⁾ 왕이 항의 서한을 제출한 사실과
 - 「싱가포르 자유 신문」⁸⁾에서 동 섬을 술탄령으로 기술한 점,
 - 그리고 1851년 동인도 회사가 동 섬에 등대를 건설하고 운영한 것도 조호르 국의 허가와 동의를 받아서 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음
- 또한 이 당시 해당 지역을 관할하던 영국 당국이 작성한 1828년 크로퍼드(John Crawford) 보고서에 따르면,
- 페드라 브랑카 해역에 살던 오랑 라우트(Orang Laut)라는 부족이 조호르 국에 복속하였다고 기술하였음
 - 이러한 것을 볼 때, 페드라 브랑카는 조호르 국의 고유 영토였다는 것임

말레이시아의 주요논거(2): 싱가포르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 위반이다

- 싱가포르의 영유권 주장은 1824년 영국의 동인도 회사와 조호르 국 술탄 사이에 체결된 ‘크로퍼드 조약’(Crawford Treaty)에 위배됨
- 크로퍼드 조약에서 조호르 국은 싱가포르와 그 일대 10마일⁹⁾을 동인도회사에 양도하였지만, 페드라 브랑카는 싱가포르에서 약 24해리에 위치하고 있음
 - 오히려 이들 조약을 통해 페드라 브랑카를 포함해 싱가포르 해협의 모든 도서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영유권을 영국이 승인했다고 주장함

7) 말레이시아는 조호르(Johor) 국의 승계국.

8) The Singapore Free Press(1843.5.25).

9) geographical mile, 1gm≒1.855km.

4. ICJ 판결의 내용

ICJ의 주요논거(1): 결정적 기일 이후의 증거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 페드라 브랑카 섬의 분쟁과 관련해 ICJ는 ‘분쟁의 핵심쟁점이 구체화된 날’로서 그 결정적 기일을 1980년 2월 14일로 보았음
 - 이 날은 1979년 지도에 페드라 브랑카 섬을 말레이시아 수역에 포함시킨데 대해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게 정식으로 서면항의한 날임
 - 1980년 2월 14일 이후의 양국의 행위는 ‘당사자의 법적 입장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것’으로 간주, 재판상 고려대상이 안됨
- 한편 미들락스와 사우스 레지의 결정적 기일은 1993년 2월 6일이며, 이 날은 양국 정부간 1차 협상에서 이들의 귀속문제가 처음 제기된 날이었음
 - 말레이시아가 1979년에 문제의 지도를 발간했을 당시 싱가포르는 페드라 브랑카만 문제 삼았고,
 - 말레이시아가 1984년 문제의 지도를 재 발간했을 때도 싱가포르의 항의는 페드라 브랑카에 국한되었음을 지적함

※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란,

일정 기일을 기점으로 그 이후의 당사국 행위는 ‘당사자의 법적 입장을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상 고려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법원의 증거력 부인 기점 일을 말함¹⁰⁾

10) 결정적 기일의 개념은 실체법적 개념이 아닌 절차법적 개념으로 ICJ의 본안 절차 진행상 법적 판단을 위한 ‘합리화 기술’이라는 비판도 있다. Karl N. Llewellyn, “Some Realism about Realism”, 44 Harvard Law Review 1238 ~1239(1931).

ICJ 판결의 주요논거(2): 페드라 브랑카 섬은 말레이시아의 고유영토였다

- ICJ는 「동부 그린란드 사건」¹¹⁾과 「팔마스 섬 사건」¹²⁾을 인용하며,
 - 영토 주권의 행사방법은 사안별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특히, ‘모든 영토에 매순간 주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음
 - 말레이시아의 고유영토론의 근거인 원시적 권원(original title)과 싱가포르의 무주지 주장의 충돌문제는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의 문제로 보았음
- ICJ는 싱가포르의 무주지 주장이 준비서면이 아닌 답변서와 구두변론 절차에서 개시된 점을 지적함
 - 그러나 페드라 브랑카 섬이 국제해협인 싱가포르 해협 내 항해상 위험요소였던 바, 과거 미 발견 되었다는 싱가포르의 주장을 일축함
- 또한 싱가포르가 무주지 주장의 대안으로 최소한 19세기 중반까지 섬의 영유권이 “미확정”(indeterminate) 상태라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 당시 영국 관헌들의 보고서에서 페드라 브랑카 해역에 살던 오랑 라우트 족이 조호르 국에게 복속했다는 내용을 중시함
 - ICJ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던 영국 관헌들의 기술은 증거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여 말레이시아의 고유영토론을 지지하였음
- ICJ는 말레이시아의 고유영토론과 싱가포르의 무주지 선점론의 쟁점을 입증책임의 문제로 보았는 바,
 -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 해협내 모든 도서에 대해 “계속적이고 평화롭게 영유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함
 - 결국, 싱가포르의 무주지 주장을 배척하고 페드라 브랑카가 말레이시아의 고유영토였다고 인정하였음

11)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Judgement, 1933, P.C.I.J., Series A/B, No.53, p.39.*

12) *Island of Palmas Case(Netherlands/United States of America), Award of 4 April 1928, RIAA, Vol.II(1949), p.840.*

ICJ 판결의 주요논거(3): 말레이시아의 섬 영유권이 점차 불명확해졌다

- ICJ는 페드라 브랑카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원시적 권원이 1824년에서 1840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에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았는데,
 - 1824년 크로퍼드 조약에 의해 싱가포르와 일대 해역에 대한 권리를 영국에게 할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의 영유권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함
 - 하지만 이 조약을 통해 오히려 영국이 말레이시아의 페드라 브랑카 영유권을 승인했다는 말레이시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음
- 그러나 1840년 이후 말레이시아가 페드라 브랑카 섬에 대한 권원을 유지하였는지 살펴보았는데,
 - 등대부지 선정과정과 등대건설 관련 일련의 주변사정, 그리고 영국과 싱가포르의 호스버러 등대관련 입법 등을 고려해 볼 때,
 - 말레이시아가 동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불명확해졌다고 함

ICJ 판결의 주요논거(4): 말레이시아는 또한 섬에 대한 권리를 부인했다

- 결정적으로 1953년 싱가포르 당국이 영해경계획정과 관련해, 페드라 브랑카 섬의 법적 지위에 대해 말레이시아에게 질의하였을 때,
 - 말레이시아가 페드라 브랑카의 소유권(ownership)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보내왔는데, ICJ는 이를 영유권(sovereignty)의 포기로 간주하였음
 - ICJ는 ‘이 서한이 중대한 가치를 갖는다’고 보았음

ICJ 판결의 주요논거(5): 그 후 싱가포르의 실효적 지배를 묵인했다

- ICJ는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의 “주권자로서의 자격”으로 한 행위에 대해 항의하지 않은 것은 묵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봄
 - 싱가포르가 섬의 영해내 난파선을 수색한 일과 주변해역 탐사시 말레이시아 관리들에게 인허가 권한을 행사한 일과,
 - 특히 페드라 브랑카 섬에 싱가포르의 국기 게양, 군사 통신시설 설치, 매립 계획, 지도발간 등에 대해 1세기 동안 항의하지 않은 사실 등을 지적하였음
- 반대로 싱가포르 역시 말레이시아의 1979년 지도 발간에 대해 항의했을 당시 페드로 브랑카 섬에 대한 항의만 했고,
 - 그 지도가 1984년 재 발행되었을 때에도, 페드라 브랑카 부분에 대해서만 항의한 사실을 들어,
 - 미들락스가 페드라 브랑카의 부속된 섬 즉, 속도(屬島)였다는 싱가포르의 주장을 배척하고, 미들락스에 대한 영유권을 말레이시아에게 인정하였음

Ⅲ.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소송전략

두 나라, ICJ에 자국 재판관 없어 임시재판관을 선임

-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자국 국적 재판관이 없어, 각각 1명씩 임시재판관을 임명했음
 - 말레이시아는 남아공 출신의 존 듀가드¹³⁾를 임시재판관으로 선임
 - 싱가포르는 인도 출신의 페마라주 라오¹⁴⁾를 임시재판관으로 선임

※ 임시재판관(ad hoc Judge)이란

소송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그 사건에 한해 임시로 임명된 재판관을 말함

- 이때 임시재판관의 국적이 꼭 자국 국적일 필요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재판관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소송전략상 당사국은 재판부에게 신뢰를 보내어 임시재판관을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선임하여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수 있음¹⁵⁾

재판소장인 히긴스, 과거 이 사안을 다룬 바 있어 재판을 기피

- 히긴스의 사건 기피는 싱가포르에게 아쉬울 수도 있었던 대목으로 평가됨
 - ICJ 재판상 모든 문제는 출석 재판관 과반수로 결정하나, 가부동수인 경우 재판소장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¹⁶⁾

13) John Robert Dugard(1936~,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ILC 위원).

14) Sreenivasa Pemmaraju Rao(ILC 위원 및 특별보고자, 인도 외무장관(Ministry of External Affairs) 취임).

15) 임시재판관이 자신을 선임한 소송당사국의 주장을 지지하는 과반수 결정에 반대한 경우는 없으며, 이는 ICJ의 재판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김대순, 「국제법론」, 제13판(서울: 삼영사, 2008), p.1148, 각주 95.

- 히긴스는 과거 재판관이 되기 전 싱가포르가 이 사안에 대해 자신에게 의견을 물었던 사실이 있어 이를 기피한 것임을 밝힘¹⁷⁾
- 이번 사건에서 히긴스가 재판을 기피하자 부소장인 알 카서네(Al-Khasawneh, 요르단)가 재판을 주재하였음

<표-3> ICJ 재판관과 국적

이름	국적	이름	국적
**Rosalyin Higgins	영국	*Awn Shawkat Al-Khasawneh	요르단
Raymond Ranjeva	마다가스카르	Peter Tomka	슬로바키아
Shi Jiuyong	중국	Ronny Abraham	프랑스
Abdul G. Koroma	시에라리온	Kenneth Keith	뉴질랜드
Conzalo Parra Aranguren	베네수엘라	Bernardo Sepúlveda Amor	멕시코
Thomas Buergenthal	미국	Mohamed Bennouna	모로코
Hisashi Owada	일본	Leonid Skotnikov	러시아
Bruno Simma	독일		

주 : **재판소장, *부소장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말레이시아의 대리인은 외교관료, 싱가포르의 대리인은 국제법학자

- ICJ 소송에서 대리인이란 국가를 대표하여 지명된 사람으로 소송의 전 당사국은 대리인에 의해 대표¹⁸⁾되는 바,
 - 국가간 관행은 외무장관을 비롯한 국가 최고위급 관료가 대리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임¹⁹⁾

16) ICJ 규정 제55조.

17) Channel NewsAsia와의 인터뷰(2008.5.23) <http://asia.news.yahoo.com/080523/5/singapore349551.html> (2008.5.24 방문).

18) ICJ 규정 제42조.

19) 또한 네덜란드 헤이그나 유럽주재 대사를 임명하는 경우와 소송당사국의 최고위 법조인을 임명하는 경우도 있음. Shabtai Rosenne, *The Law and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1920-2005*(The Hague: Martinus Nijoff, 2006), Vol.III, pp.1120~1121.

- 말레이시아는 외교관료 출신의 압둘 카디르(Tan Sri Abdul Kadir) 대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함
 - 싱가포르는 저명한 국제법 학자인 토미 쿠(Tommy Koh) 국립 싱가포르 대학교수를 대리인으로 선임함
- 「리기탄과 시파단 도서분쟁사건」²⁰⁾ 당시, 말레이시아 외교부 사무총장이었던 압둘 카디르는 소송 팀을 이끌어 승리했음
- 그 공로로 2003년 총리 외교특보로 임명되었던 압둘 카디르는 이번 소송에서도 기존의 소송 팀을 그대로 고수하였음
 - 한편 ICJ에 첫 소송을 낸 싱가포르는 앞선 「리기탄과 시파단 도서분쟁사건」²¹⁾의 인도네시아 측 법률고문²²⁾ 팀을 영입하여 소송 팀을 구성하였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던 변호인 팀을 영입

-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의 도서분쟁 사건 때 승리의 주역이었던 엘리후 라우터팍트²³⁾와 제임스 크러포드,²⁴⁾ 니콜라스 쉬라이버²⁵⁾ 등을 선임하자,
-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국제법학자인 이안 브라운리²⁶⁾를 영입하는 한편, 말레이시아에게 패소했던 인도네시아 측 법률고문이었던 알랑 펠레²⁷⁾와 로드만 번디²⁸⁾ 등을 선임하였음

20)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Indonesia/Malaysia), Judgement, I.C.J. Reports 2002, p.625.*

21)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Indonesia/Malaysia), Judgement, I.C.J. Reports 2002, p.625.*

22) 법률고문이란 변호사로서 재판소에 출두할 법적 자격을 갖춘 이들을 지칭함.

23) Elihu Lauterpact(1928~,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수, 라우터팍트 국제법연구소 소장).

24) James Crawford(1948~, 호주, 캠브리지 대학 교수).

25) Nicolaas Jan Schrijver(1954~,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수).

26) Ian Brownlie(1932~, 영국, 전 옥스퍼드 대학 교수).

27) Alain Pellet(1947~, 프랑스, 파리 제10-남떼르 대학 교수, 전 유엔 국제법위원회 의장).

28) Rodman Bundy(1951~, 미국, 영국계 로펌 Eversheds 변호사).

- 이는 비록 말레이시아에게 패했지만 그들의 소송전략을 파악할 수 있었던 인도네시아 측 법률고문 팀을 활용하고자 하는 싱가포르의 전략적 선택으로 판단됨

IV. 판결에 대한 양국의 입장 및 시사점

1. 판결에 대한 양국의 입장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재판전 ICJ 판결 결과 수용 천명

-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이번 ICJ 판결을 수용할 것임을 밝혔는데,
 - 싱가포르의 외무장관 조지 여(George Yeo)와 말레이시아 외무장관 라이스 야팀(Rais Yatime)은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수용한다는 공동성명 발표(2008.4.18)
 - 판결이후 말레이시아는 페드라 브랑카를 잃은 것은 유감이나 미들락스를 얻었으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표명(2008.5.24)²⁹⁾

사우스 레지의 영유권 문제는 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따라 결정

- ICJ가 간출지인 사우스 레지는 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하자,
 - 말레이시아는 사우스 레지가 미들락스의 영해 내에 있으므로 당연히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 한편 싱가포르 역시 페드라 브랑카에서 2.2해리 떨어진 사우스 레지를 자국의 영해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³⁰⁾
- 해양경계획정의 문제는 양국 모두 유엔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므로 국제법에 따라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바,

29) <http://www.bernama.com> (2008.5.24 방문).

30) 싱가포르는 이미 외교부 성명을 통해 ‘페드라 브랑카는 12마일 영해와 200해리 EEZ를 갖는다’고 선포(1980.9.15)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영해와 EEZ의 좌표를 공포하겠으며, 국제법에 따라 주변국가와 중첩해역에 관한 협상을 하여 합의된 경계선을 도출할 것을 밝힌 바 있음 <http://www.mfa.gov.sg> (2008.5.24 방문).

- 양국의 외무장관은 ICJ 판결의 이행을 다짐하며, 페드라 브랑카 섬 인근 해양관련 쟁점을 협의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고,
- 상기 도서 인근 해역에서 사고 발생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양국의 어업인들이 전통적 어로행위를 계속하는 데 동의하였음³¹⁾

싱가포르는 영유권 분쟁에 국제재판을 통한 해결방식 선호

- 싱가포르는 지난 5월 23일 ICJ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에서 보도자료³²⁾를 내었는데,
 - 이번 사건은 양자간 영유권 분쟁이 제3자인 국제재판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는 입장을 밝혀,
 - 싱가포르의 이러한 태도는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외교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말레이시아, 사건관련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서

- 말레이시아가 페드라 브랑카 영유권에 관한 새로운 증거를 찾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 싱가포르 법무장관은 말레이시아가 ICJ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 말레이시아가 찾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무엇인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혀,³³⁾ ICJ 판결 이행의 문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31) 2008.6.3.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공동성명. <http://app.mfa.gov.sg>. (2008.6.9 방문).

32) <http://app.sprinter.gov.sg/data/pr/20080523979.htm>(2008.5.24 방문).

33) www.channelnewsasia.com(2008.6.4 방문)

2. 시사점

ICJ, 섬의 소유권을 부인한 서한을 결정적 증거로 채택

- 이번 판결은 ICJ가 도서분쟁사건에서 역사적 권원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였으나,
 - 최종적으로 실효적 지배국인 싱가포르의 손을 들어주는 한계를 보여,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기존의 비판이 제기될 우려도 있음
 - 그러나 말레이시아 당국의 ‘공식 서한’에서 표시된 국가의사를 결정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ICJ 재판관, 반대의견 등에서 판결의 문제점 지적

- 말레이시아가 섬의 주권을 영국과 그 승계국인 싱가포르에게 이양하는 데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ICJ의 결론에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 ICJ가 주권행사로 고려한 싱가포르 측의 실효적 지배 조치들은 중요한 것도 지속적인 것도 아니었으므로,
 - 페드라 브랑카 섬은 싱가포르가 아닌 말레이시아의 영토로 귀속되었어야 했다는 것임³⁴⁾
- 섬에 대한 주권이 영국과 그 승계국인 싱가포르에게 넘어가게 되는 이유를 ICJ가 조호르 국의 ‘묵시적 동의’에서 찾은 데 대해,
 - 어떻게 조호르 술탄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섬의 주권이 넘어갈 수 있느냐며, 이러한 법리 구성을 하기에는 증거가 충분치 않았으며,
 - 공식 서한을 보낼 당시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식민지로서 영국에게 어떤 반대의견을 제시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³⁵⁾
- ICJ가 1953년 ‘페드라 브랑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음’을 표명한 말레이시아의

34) *Joint dissenting opinion of Judges Simma and Abraham*. paras. 28~30.

35) *Declaration of Judge Ranjeva*. para.2.

공식 서한을 패소의 결정적 증거로 삼은 데 대해,

- 말레이시아가 사용한 ‘소유권’(ownership)이라는 표현이 ‘영유권’(sovereignty)을 의미하지 않음은 명백하고,³⁶⁾
- 오히려 싱가포르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다 확실한 공식확인을 말레이시아에게 요구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었음³⁷⁾

□ 심리절차때 청문절차 등 여러 가지 사건이 몰리는 시간적 압박 때문에

- 법원의 결정에 대한 반박논리 작성 시 곤란을 겪었다는 비판³⁸⁾도 제기되어 재판절차 진행관련 사법행정에 대해서도 향후 논란이 예상됨

영유권 관련 ICJ의 최근 판례 경향은 실효적 지배를 중시

□ ICJ는 영유권 관련 판결시 역사적 추론보다는 식민지 전후 행사되었던 국가관할권의 실질적인 행사와 목인의 유무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어,

- 온두라스의 점유사실에 엘 살바도르가 효과적으로 항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엘 티그레(El Tigre) 섬의 영유권을 온두라스에게 인정했던 사례도 있고,³⁹⁾
- 말레이시아가 리키탄과 시파단 섬에 바다거북 보호령을 내려 규제한 사실과 등대를 설치·운영해오는 데 대해 인도네시아가 항의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두 섬의 영유권을 말레이시아에게 인정한 사례도 있음⁴⁰⁾

□ 특히 ICJ는 무인도서나 암석 등에 관한 영유권 결정에는 ‘미약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의 표현’이라도 있었던 경우, 분쟁도서 전체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바,

- 최근 이민, 어업활동, 건축규제 등의 공공업무의 권한행사를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인정받은 온두라스가 도서 전체를 획득한 사례도 있었음⁴¹⁾

36) *separate opinion of Judge Parra-Aranguren*, para. 17.

37) *ibid*, para.20.

38) *ibid*, para.29.

39) *The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El Salvador/Honduras; Nicaragua intervening)*, *Judgement*, *I.C.J. Reports 1992*, p.351.

40)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Indonesia/Malaysia)*, *Judgement*, *I.C.J. Reports 2002*, p.625.

- 이번 페드라 브랑카 사건에서도 싱가포르의 ‘주권자의 자격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 말레이시아가 장기간 항의하지 않은 점을 ICJ는 지적한 바 있음

기존 국제재판에 선임됐던 인사가 법률고문으로 영입되는 경향 확인

- 이번 사건에 참여한 임시재판관이나 법률고문들은 대부분 영미권 인사들이거나 영미권에서 교육받은 인사로서,
 -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위원 또는 영미권 명문대학의 국제법 교수들이 대부분이었음
 - 또 기존 국제재판의 임시재판관이나 법률고문이 다시 임용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4> 페드라 브랑카 사건의 법률고문과 수임사건 현황

이름	국적 및 소속	참여 사건
엘리후 라우터팍트 (Elihu Lauterpart)	영국, 1928년생, 캠브리지대 교수, 라우터팍트 국제법 연구소 소장,	2002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의 리기탄과 시파단 도서분쟁 사건(*말레이시아) 2001년 카타르·바레인간의 해양경계 및 영토분쟁에 관한 사건(*바레인) 1992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간의 폰세카 만(灣) 분쟁 사건(*엘살바도르) 1999년 카시킬리/세두두 도서분쟁사건(*나미비아)
이안 브라운리 (Ian Brownlie)	영국, 1932년생, 전 옥스퍼드대 교수	2003년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의 영토 및 경계획정분쟁사건(*나이지리아) 1999년 카시킬리/세두두 도서분쟁사건(*보츠와나) 1992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간의 폰세카 만 분쟁사건(*니카라과(소송참가국))
제임스 크러포드 (James Crawford)	호주, 1948년생, 캠브리지대 교수	2003년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의 영토 및 경계획정분쟁사건(*나이지리아) 1994년 리비아/차드 영토분쟁사건(*리비아)
로드만 번디 (Rodman Bundy)	미국, 1951년생, 영국 로펌 Everheds 파트너 변호사	1998년 홍해상의 도서분쟁 중재재판 사건(*예멘), 2002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의 리기탄과 시파단 도서분쟁사건(*말레이시아)

주 : *선임국가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1)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ribean Sea(Nicaragua v. Honduras)*, 9 October 2007 of Judgement. p.1.